

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민  
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8 월 10 일

여 수 시 장 권 오봉



여수시 조례 제1628호

붙임 여수시 시민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조례 제1628호

##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”을 “조례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여수시</u> 시민음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·증진과 지역 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조례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.</p>